

2023학년도 제5차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자 2024. 01. 30.			
이사정수	11명	재적이사	11명
감사정수	2명	재적감사	2명

1. 개최일시 : 2024년 2월 7일 오전 10시 30분
2. 개최장소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단국역사관 604호(회의실)
3. 임원 출결현황

구 분	인 원	성 명
참석인원	10명	이 사 김 무 일, 김 성 재, 김 정 배, 박 유 철, 방 장 식, 어 진 우, 이 동 진, 이 상 배, 장 호 성, 조 인 호
	1명	감 사 김 영 덕
불참인원	2명	이 사 박 호 군 감 사 이 원 창

4. 참석 직원 : 사무처장 차병권, 총무팀장 송명훈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회 의 안 건

1. 단국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
2. 단국대학교 직제 조정에 관한 건
3. 단국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편제(교육조직) 조정에 관한 건
4.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취득에 관한 건
5.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차량운반구 처분에 관한 건
6.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불용 고정자산 처분에 관한 건
7.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기채 승인에 관한 건
8.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불용 고정자산 처분에 관한 건
9.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기채 일부변경에 관한 건
10.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장기부실채권 대손상각에 관한 건



11.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고등학교 교장 자격인정,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및 교장 임명에 관한 건
12.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고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및 교감직무대리 임명에 관한 건
13.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고등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
14.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및 교감 임명에 관한 건
15.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
16.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
17.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4회계연도 예산에 관한 건
18.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건
19. 법인 정관 개정에 관한 건
20. 법인 정관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건
21. 법인 임원(이사) 선임에 관한 건

의 결 사 항

1. 단국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대학교 교무처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강정원 대학교 교무처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1”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2. 단국대학교 직제 조정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직제 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대학교 기획실장 및 의료원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신은종 대학교 기획실장 및 조준성 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직제 조정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2”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3. 단국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편제(교육조직) 조정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편제(교육조직) 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대학교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신은종 대학교 기획실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편제(교육조직) 조정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3”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4.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취득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취득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대학교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신은종 대학교 기획실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취득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4”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5.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차량운반구 처분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차량운반구 처분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대학교 총무인사처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정중모 대학교 총무인사처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차량운반구 처분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5”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6.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불용 고정자산 처분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불용 고정자산 처분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김재일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불용 고정자산 처분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6”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7.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기채 승인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기채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김재일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기채 승인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7”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8.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불용 고정자산 처분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불용 고정자산 처분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죽전치과병원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정동화 죽전치과병원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불용 고정자산 처분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8”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9.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기채 일부변경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기채 일부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죽전치과병원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정동화 죽전치과병원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기채 일부변경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9”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10.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장기부실채권 대손상각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장기부실채권 대손상각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죽전치과병원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정동화 죽전치과병원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장기부실채권 대손상각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10”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11.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고등학교 교장 자격인정,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및 교장 임명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고등학교 교장 자격인정,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및 교장 임명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법인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차병원 법인 사무처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고등학교 교장 자격인정, 자격 연수 대상자 추천 및 교장 임명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11”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12.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및 교감직무대리 임명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및 교감직무대리 임명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오장원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및 교감직무대리 임명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12”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13.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오장원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13”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14.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및 교감 임명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및 교감 임명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한유수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및 교감 임명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14”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15.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한유수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15”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16.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교장직무대리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전영철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교장직무대리가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16”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17.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4회계연도 예산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4회계연도 예산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장,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장,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교장직무대리, 대학교 기획실장,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치과대학 치과병원장, 죽전치과병원장 및 법인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오장원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한유수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전영철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교장직무대리가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신은중 단국대학교 기획실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김재일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이종혁 치과대학 치과병원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정동화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차병권 법인 사무처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기관별 2023추가경정예산 및 2024예산 편성 현황

(단위:천원)

회계명	예산 금액 (수입 · 지출 각 총액)		별첨	비고
	2023 추가경정예산	2024 예산		
·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10,451,753	7,850,710	17-1, 17-12	
·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5,173,907	3,588,004	17-2, 17-13	
·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4,966,937	4,077,879	17-3, 17-14	
· 단국대학교	338,661,376	335,826,642	17-4, 17-15	
· 의료원	422,386,631	415,039,451	17-5, 17-16	
·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32,516,123	35,116,386	17-6, 17-17	
·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12,649,106	17,771,826	17-7, 17-18	
· 법인 일반업무	25,330,425	25,158,812	17-8, 17-19	
· 법인 수익사업 (단국대학교병원 천안장례식장)	4,930,677	4,978,738	17-9, 17-20	
· 법인 수익사업(단국세종빌딩)	5,014,553	5,686,445	17-10, 17-21	
· 법인 수익사업(단국성정빌딩)	6,633,765	7,375,501	17-11, 17-22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4회계연도 예산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17”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18.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법인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차병권 법인 사무처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18”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19. 법인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법인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법인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차병권 법인 사무처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법인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19”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20. 법인 정관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법인 정관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법인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차병원 법인 사무처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법인 정관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건이 출석이사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첨20”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21. 법인 임원(이사) 선임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법인 임원(이사) 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법인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 차병원 법인 사무처장이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법인 임원인 김성재 이사 임기(2020.03.09.~2024.03.08.)가 만료 되므로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심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 김성재 이사의 이석을 요청하다.
- 김성재 이사 이석하다.
- 박유철 이사가 김성재 이사는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법인 이사로 재임하며 창학이념 구현과 법인 발전에 지속적으로 공헌하고 있으므로 중임을 제안하다.
- 이동건 이사가 박유철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참석이사 전원 박유철, 이동건 이사 의견에 동의하다.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김성재 이사(임기 : 2024.03.09.~2028.03.08)의 중임이 가결됨을 선포하다.
- 김성재 이사 입실하다.

※ 보고사항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1.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결과, 2. 법인과 대학교 및 각 부속병원의 보수관련 규정 및 교직원 보수표 개정 내용을 보고하다.

※ 비공개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별첨10” 및 “보고사항2”를 비공개하기로 출석이사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자 3인의 호선에 관한 건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제2항의 단서



조항을 근거로 출석임원 중 3인(김성재, 방장식, 김영덕)을 간서명자로 호선했다.

폐 회 : 의장 장호성 이사장은 본 안건의 심의가 전부 끝났으므로 13시 0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2월 7일

의 장 이 사 장	장 호 성	장 호 성
이 사	김 무 일	김 무 일
"	김 성 재	김 성 재
"	김 정 배	김 정 배
"	박 유 철	박 유 철
"	박 호 군	박 호 군
"	방 장 식	방 장 식
"	어 진 우	어 진 우
"	이 동 전	이 동 전



“ 이 상 배 이 상 배

“ 조 인 호 조 인 호

감 사 김 영 덕 김 영 덕

“ 이 원 창 불 참



<별첨 1>

단국대학교 교원 임용 대상자 명단

☐ 신규임용

○ 정년트랙교원

캠퍼스	구 분	소 속	임용직급	성 명	임용기간	비고
충전 (9명)	전임교원 (9명)	문과대학 사학과	조교수	-----	2024.3.1-2026.2.28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2024.3.1-2026.2.28	
		사회과학대학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교수		2024.3.1-2026.2.28	
		경영경제대학 글로벌경영학과	조교수		2024.3.1-2026.2.28	
		공과대학 고분자시스템공학부	조교수		2024.3.1-2026.2.28	
		SW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조교수		2024.3.1-2026.2.28	
		SW융합대학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조교수		2024.3.1-2026.2.28	
		SW융합대학 사이버보안학과	조교수		2024.3.1-2026.2.28	
		대학원 인공지능융합학과	조교수		2024.3.1-2026.2.28	
천안 (17명)	전임교원 (17명)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조교수		2024.3.1-2026.2.28	
		외국어대학 유럽중남미학부	조교수		2024.3.1-2026.2.28	
		과학기술대학	부교수		2024.3.1-2026.2.28	
		과학기술대학 화학과	조교수		2024.3.1-2026.2.28	
		과학기술대학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2024.3.1-2026.2.28	
		바이오융합대학 식품공학과	조교수		2024.3.1-2026.2.28	
		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조교수		2024.3.1-2026.2.28	
		의과대학 의예과	조교수		2024.3.1-2026.2.28	
		의과대학 의예과	조교수		2024.3.1-2026.2.28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2024.3.1-2026.2.28	
		의과대학 의학과	교 수		2024.3.1-2026.2.28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2024.3.1-2026.2.28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2024.3.1-2026.2.28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2024.3.1-2026.2.28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2024.3.1-2026.2.28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2024.3.1-2026.2.28	
		치과대학 치의학과	조교수		2024.3.1-2026.2.28	
		치과대학 치의학과	조교수		2024.3.1-2026.2.28	



○ 비정년트랙교원

캠퍼스	구 분	소 속	임용직급	성 명	임용기간	비고
죽전 (1명)	강의전담교원 (1명)	행정법무대학원 가족상담학과	강의전담 조교수		2024.3.1-2026.2.28	

□ 승진임용

캠퍼스 (근무지)	소 속	성명	현직급	승진직급	임용기간	비고
죽전 (17명)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2033.02.28	
	공과대학 건축학부		부교수	교수	2024.03.01-2036.08.31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부교수	교수	2024.03.01-2031.08.31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부교수	교수	2024.03.01-2036.02.29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부교수	교수	2024.03.01-2039.02.28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부교수	교수	2024.03.01-2033.02.28	
	대학원 테이더지식서비스공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2032.08.31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2037.02.28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2035.08.31	
	자유교양대학		교육부교수	교육교수	2024.03.01-2031.08.31	
	공과대학 고분자시스템공학부		조교수	부교수	2024.03.01-2030.02.28	
	공과대학 고분자시스템공학부		조교수	부교수	2024.03.01-2026.02.28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부교수	2024.03.01-2030.02.28	조건부
	음악·예술대학 도예과		조교수	부교수	2024.03.01-2030.02.28	
	음악·예술대학 디자인학부		조교수	부교수	2024.03.01-2030.02.28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조교수	부교수	2024.03.01-2030.02.28	
	공과대학		교육조교수	교육부교수	2024.03.01-2030.02.28	
천안 (21명)	과학기술대학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2044.02.29	
	과학기술대학 식품공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2036.08.31	
	과학기술대학 에너지공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2039.02.28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학부		부교수	교수	2024.03.01-2039.08.31	
	예술대학 미술학부		부교수	교수	2024.03.01-2036.02.29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2043.02.28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2040.02.29	
	치과대학 치의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2039.02.28	



캠퍼스 (근무지)	소속	성명	현직급	승진직급	임용기간	비고
	약학대학 약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2041.08.31	
	약학대학 약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2045.02.28	
	공공·보건과학대학 심리치료학과		부교수	부교수	2024.03.01~2028.02.29	※표하단 주석 참조
	과학기술대학 수학과		조교수	부교수	2024.03.01~2026.02.28	
	과학기술대학 에너지공학과		조교수	부교수	2024.03.01~2030.02.28	
	의과대학 의예과		조교수	부교수	2024.03.01~2026.02.28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부교수	2024.03.01~2030.02.28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부교수	2024.03.01~2030.02.28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부교수	2024.03.01~2030.02.28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부교수	2024.03.01~2030.02.28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부교수	2024.03.01~2030.02.28	
	치과대학 치의예과		조교수	부교수	2024.03.01~2030.02.28	
	치과대학 치의학과		조교수	부교수	2024.03.01~2030.02.28	
	정책경영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2024.03.01~2026.02.28	

※정년보장심사통과에 따른 잔여 승진기간 임용대상자(교원인사규정 제24조)

☐ 재임용

캠퍼스 (근무지)	소속	성명	직급	임용기간	비고
죽전 (24명)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부교수	2024.03.01~2027.02.28	
	공과대학 건축학부		부교수	2024.03.01~2027.02.28	
	사범대학 교직교육과		부교수	2024.03.01~2025.02.28	조건부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부교수	2024.03.01~2027.02.28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부교수	2024.03.01~2027.02.28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부교수	2024.03.01~2027.02.28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부교수	2024.03.01~2027.02.28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부교수	2024.03.01~2027.02.28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부교수	2024.03.01~2027.02.28	
	자유교양대학		교육부교수	2024.03.01~2027.02.28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		조교수	2024.03.01~2028.02.29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조교수	2024.03.01~2028.02.29	
	공과대학 고분자시스템공학부		조교수	2024.03.01~2026.02.28	



캠퍼스 (근무지)	소속	성명	직급	임용기간	비고
	공과대학 교분자시스템공학부		조교수	2024.03.01~2026.02.28	
	공과대학 교분자시스템공학부		조교수	2024.03.01~2028.02.29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조교수	2024.03.01~2028.02.29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2024.03.01~2026.02.28	
	SW융합대학 산업보안학과		조교수	2024.03.01~2028.02.29	
	음악·예술대학 도예과		조교수	2024.03.01~2026.02.28	
	음악·예술대학 디자인학부		조교수	2024.03.01~2026.02.28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조교수	2024.03.01~2026.02.28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조교수	2024.03.01~2028.02.29	
	공과대학		교육조교수	2024.03.01~2026.02.28	
	일본연구소		HK조교수	2024.03.01~2028.02.29	
천안 (31명)	공공·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교수	2024.03.01~2030.08.31	
	과학기술대학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2024.03.01~2027.02.28	
	과학기술대학 식품공학과		부교수	2024.03.01~2027.02.28	
	과학기술대학 에너지공학과		부교수	2024.03.01~2027.02.28	
	예술대학 미술학부		부교수	2024.03.01~2027.02.28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		부교수	2024.03.01~2028.02.29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2024.03.01~2027.02.28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2024.03.01~2027.02.28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2024.03.01~2027.02.28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2024.03.01~2028.02.29	
	공공·보건과학대학 심리치료학과		부교수	2024.03.01~2028.02.29	
	치과대학 치의학과		부교수	2024.03.01~2027.02.28	
	약학대학 약학과		부교수	2024.03.01~2027.02.28	
	과학기술대학 경영공학과		교육부교수	2024.03.01~2027.02.28	조진부
	과학기술대학 수학과		조교수	2024.03.01~2026.02.28	
	과학기술대학 에너지공학과		조교수	2024.03.01~2026.02.28	
	예술대학		조교수	2024.03.01~2026.02.28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경영학과		조교수	2024.03.01~2028.02.29	
	의과대학 의예과		조교수	2024.03.01~2026.02.28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2024.03.01~2026.02.28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2024.03.01~2026.02.28	



캠퍼스 (근무지)	소속	성명	직급	임용기간	비고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2024.03.01~2026.02.28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2024.03.01~2026.02.28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2024.03.01~2028.02.29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2024.03.01~2028.02.29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2024.03.01~2028.02.29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2024.03.01~2028.02.29	
	공공·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조교수	2024.03.01~2026.02.28	
	치과대학 치의예과		조교수	2024.03.01~2026.02.28	
	치과대학 치의학과		조교수	2024.03.01~2026.02.28	
	정책경영대학원		조교수	2024.03.01~2026.02.28	

☐ 정년보장임용

캠퍼스 (근무지)	소속	성명	직급	임용기간	비고
죽전 (2명)	공과대학 고분자시스템공학부		조교수	2024.03.01~2049.02.28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2024.03.01~2044.02.29	조건부
천안 (5명)	공공·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교수	2024.03.01~2031.08.31	
	공공·보건과학대학 심리치료학과		부교수	2024.03.01~2038.08.31	
	과학기술대학 에너지공학과		조교수	2024.03.01~2047.02.28	
	공공·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조교수	2024.03.01~2052.02.29	
	치과대학 치의예과		조교수	2024.03.01~2052.02.29	

☐ 조기정년보장임용

캠퍼스 (근무지)	소속	성명	직급	임용기간	비고
죽전 (1명)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부교수	2024.03.01~2026.02.28	

☐ 비정년트랙교원 재임용

캠퍼스 (근무지)	소속	성명	직급	임용기간	비고
죽전 (32명)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경영경제대학 무역학과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공과대학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캠퍼스 (본부지)	소속	성명	직급	임용기간	비고
	공과대학 고분자시스템공학부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공과대학 건축학부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SW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조건부
	자유교양대학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자유교양대학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조건부
	자유교양대학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자유교양대학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자유교양대학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자유교양대학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조건부
	자유교양대학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조건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조건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문화예술대학원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연구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공과대학 건축학부		연구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조건부
	자유교양대학		연구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특수교육대학원		연구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특수교육대학원		연구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석주선기념박물관		연구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조건부
	동양학연구원		연구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조건부
	동양학연구원		연구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조건부
	법학연구소		연구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자유교양대학		외국어교육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자유교양대학		외국어교육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조건부
	자유교양대학		외국어교육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자유교양대학		외국어교육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캠퍼스 (근무지)	소속	성명	직급	임용기간	비고
천안 (27명)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외국어대학 유럽중남미학부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예술대학 미술학부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예술대학 미술학부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예술대학 뉴뮤직과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조건부
	공공·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자유교양대학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자유교양대학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자유교양대학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자유교양대학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자유교양대학		강의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연구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조건부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연구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연구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과학기술대학 수학과		연구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과학기술대학 화학과		연구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학부		연구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대학원 운동의과학과		연구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스포츠과학대학원		연구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한국배크만광의료기기연구센터		연구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대학원 운동의과학과		산학협력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조건부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외국어교육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외국어대학 유럽중남미학부		외국어교육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조건부
	외국어대학 영어과		외국어교육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자유교양대학		외국어교육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자유교양대학		외국어교육전담조교수	2024.03.01~2026.02.28	조건부

(*) 조건부 임용

2024년 2월말까지 연구실적 게재 여부 확인 후, 미게재 시 승진임용 대상자는 승진임용 취소, 재임용 대상자는 면본직(재임용 탈락), 정년보장임용 대상자는 교원인사규정 제21조 및 제33조의4에 따라 조치함



<별첨 2>

단국대학교 직제 조정

1. 미래융합연구원 및 교무처·천안캠퍼스 교무처 직제 조정

가. 미래융합연구원 직제조정

1) 조정내용

현 행		조 정	비고
미래융합연구원	연구전략센터	<폐지>	
	연구기획팀		
	연구평가지원팀		

2) 조정사유

- 대학의 연구 관련 전략수립, 기획 및 지원 업무를 대학 내 유관부서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대내외 연구 동향에 따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연구조직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이에 미래융합연구원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교무처(천안캠퍼스 교무처) 및 산학협력단(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시행시기 : 2024.3.1.부터

나. 교무처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 직제 조정

1) 조정 내용

구 분	현 행	조 정	비고
교무처	교무팀	<현행과 동일>	축전
	<신설>	연구팀	
	학사팀	<현행과 동일>	
천안캠퍼스 교무처	교무팀	<현행과 동일>	천안
	<신설>	연구팀	
	학사팀	<현행과 동일>	



2) 조정사유

- 대학 연구분야 지원 제도 기획·운영 업무와 연구업적 평가·관리 업무의 연계를 통해 대내외 연구 동향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이에 교무처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연구팀을 신설하여 캠퍼스별 연구분야 특성화 체제 고도화 및 연구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대학 연구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3) 시행시기 : 2024.3.1.부터

2 천안캠퍼스 입학처 신설

가. 신설내용

현 행		신 설		비 고
입학처	입학1팀	입학처	입학팀	축전
	입학2팀	천안캠퍼스 입학처	입학팀	천안

나. 신설사유

- 비수도권 소재 캠퍼스라는 측면에서 대외적 환경변화에 취약한 천안캠퍼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천안캠퍼스 입학처를 신설하고 천안캠퍼스 지원자층에 맞는 전형계획 수립 및 입시홍보 전략을 마련하여 우수한 입학자원을 확보하고자 함

※ 천안캠퍼스 입학처 신설에 따라 입학1팀과 입학2팀은 각각 입학팀으로 명칭변경

다. 시행시기 : 2024.3.1.부터



3. 취창업지원처 직제 조정

가. 조정내용

구 분	현 행		조 정		비고
취창업지원처	취창업진로1팀		〈현행과 동일〉		
	취창업진로2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운영팀	〈현행과 동일〉	사업운영1팀	축전
〈신설〉		사업운영2팀		천안	

나. 조정사유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차성과 평가의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천안캠퍼스의 팀장급 인력 보강 및 캠퍼스별 사업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대학의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고자 함

다. 시행시기 : 2024.3.1.부터



4. 총무인사처 및 총무처 직제 조정

가. 조정내용

구 분	현 행	조 정	비고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현행과 동일>	
	구매팀	<폐지>	
	<신설>	시설팀	시설관련 업무 분리
	안전관리팀	안전관리팀	안전관련 업무 통합
	중대재해관리팀		
총무처	총무팀	<현행과 동일>	
	구매팀	<폐지>	
	<신설>	시설팀	시설관련 업무 분리
	안전관리팀	안전관리팀	안전관련 업무 통합
	중대재해관리팀		

나. 조정사유

1) 안전관리팀·중대재해관리팀 통합 및 시설팀 신설

- 교육부의 ‘산업안전보건법령(중대재해처벌법 포함)의 고등교육기관 적용 가이드(안)’에 따라 대학교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을 통합된 안전관리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총무(인사)처의 안전관리팀과 중대재해관리팀에 분산되어 있는 우리 대학의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관리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시설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팀의 시설 관련 업무를 분리하고자 함

2) 구매팀 폐지

- 대학 자산 구매 및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자산 구매 적정성 판단의 정확성을 기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매 관련 업무를 재무관리처로 이동하고 구매팀을 폐지하고자 함

다. 시행시기 : 2024.3.1.부터



5. 재무관리처 직제 조정

가. 조정내용

구 분	현 행	조 정	비고
재무관리처	재무회계1팀	<현행과 동일>	축전
	자산관리1팀	구매관제1팀	
	재무회계2팀	<현행과 동일>	천안
	자산관리2팀	구매관제2팀	

나. 조정사유

- 대학 자산 구매 및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자산 구매 적정성 판단의 정확성을 기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매 관련 업무를 재무관리처의 자산관리1, 2팀에 통합하고, 통합된 업무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구매관제1, 2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다. 시행시기 : 2024.3.1.부터



6. 대외협력처 및 미디어콘텐츠홍보처 직제 조정

가. 조정내용

관할	구분	현행		조정		비고
대외 부총장	대학 본부	대 외 협력처	대외협력1팀	대 외 협력처	대외협력팀	
			대외협력2팀		<폐지>	
			<신설>		홍보팀	
		미디어 콘텐츠 홍보처	홍보팀	<폐지>	<폐지>	
			출판팀			
			뉴미디어운영팀			
			단국미디어센터			
	부속기관	<신설>		단국미디어센터	출판미디어운영팀	

나. 조정사유

- 국내외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즉시 대응을 위해 대외협력·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합 홍보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발전기금 모금과 홍보를 연계해 발전기금 모금 확대 등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미디어콘텐츠홍보처를 폐지하고 대외협력처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대외협력1, 2팀을 대외협력팀으로, 홍보팀과 뉴미디어운영팀의 뉴미디어 기획·제작 및 운영 업무를 홍보팀으로 통합하여 중복 기능을 단일부서에서 수행함으로써 부서의 업무 기능을 효율화하고자 함
- 단국미디어센터의 역할기능 재정립을 통한 센터 운영을 효율화하고, 각 학생 언론 매체별 기능 재정립을 통한 학생 언론문화 개선을 위해 단국미디어센터를 대외부총장 관할의 부속기관으로 신설하고, 산하에 출판과 언론매체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출판미디어운영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다. 시행시기 : 2024.3.1.부터



7. 미래교육혁신원 직제 조정

가. 조정내용

현 행		조 정		비고
미래교육 혁신원	교육성과평가센터	교육 혁신원	<현행과 동일>	
	EduAI센터		<폐지>	교육성과평가센터로 업무 이관
	교수학습개발센터		<현행과 동일>	
	첨단교육센터		<폐지>	교육성과평가센터 및 교수학습개발센터로 업무 이관
	<신설>		DKU아너스센터	
	미래교육팀		교육혁신팀	명칭 변경
	미래교육지원1팀		<폐지>	디지털정보원으로 업무 이관
	미래교육지원2팀			

나. 조정사유

- 중복 업무 조정을 통한 조직 슬림화 및 핵심 기능 위주의 조직 구성을 통한 업무 효율화 확보를 위하여 기존 4개 센터를 2개 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개인 맞춤형 성장을 위한 우수 학생 몰입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리더십과 협력에 기반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 인재의 성장 동력을 대학에 환원하여 후학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순환 제도를 마련을 위해 DKU아너스센터를 신설하고자 함
- * 아너스 특별교과 및 특별비교과 프로그램 제공, 관심 분야 1:1 컨설팅 및 멘토링, 선후배·동문기업인과의 커뮤니티 활동, 학술교류 및 글로벌 프로그램 기회 제공 등
- 하드웨어 기반 교육행정 인프라 운영 및 지원 조직의 통합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위해 미래교육지원1, 2팀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는 디지털정보원으로 이관하고자 함
- 대학의 교육혁신 추진 전담 직제의 목표 및 직무 범위에 맞게 미래교육혁신원을 교육혁신원으로, 미래교육팀을 교육혁신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다. 시행시기 : 2024.3.1.부터



8. 빅데이터정보원 직제 조정

가. 조정내용

현 행			조 정			비고
빅데이터 정보원	정보화 기획센터	정보기획팀	디지털 정보원	<폐지>	<현행과 동일>	
		정보인프라팀			디지털인프라1팀	축전
		빅데이터운영팀			디지털인프라2팀	천안
					<폐지>	
	<신설>	<신설>		원격교육 지원센터	디지털러닝팀	

나. 조정사유

- 대학 내 하드웨어 인프라 운영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교육·행정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고자 함
- 이에 기존 정보인프라팀의 ‘유·무선 네트워크, 서버, 전화, PC관리 및 운영지원’, 미래교육혁신원 미래교육지원1, 2팀의 ‘멀티강의실, 행사지원, 촬영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지원’, 각 단과대학 교학행정팀의 ‘PC실습실 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디지털인프라1, 2팀에서 캠퍼스별로 관리하고자 함
-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대응할 수 있는 원격수업 전담조직으로 운영하고, 산하에 디지털러닝팀을 신설하여 기존 빅데이터운영팀의 업무와 원격수업 관련 업무(e-Campus/콘텐츠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원격강의 질 관리 등)를 통합하여 수행하고자 함

다. 시행시기 : 2024.3.1.부터



9. 인재개발원 직제 조정

가. 조정내용

구 분	현 행		조 정	비고
부속기관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지원팀	<폐지>	

나. 조정사유

- 인재개발원은 우수인재 양성 및 취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4년에 신설되었으나 고시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직무는 취창업지원처로 이관되고, DLP(Dankook Leaders Program) 및 DEP(Dankook Elite Program) 운영이 종료되어 기능이 축소되었음
-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단국인재아카데미 프로그램은 교육혁신원에 신설되는 DKU아너스센터로 이관되어 확대 운영될 계획이므로 조직의 슬림화 및 효율화를 위해 인재개발원을 폐지하고자 함

다. 시행시기 : 2024.3.1.부터

10. 자유교양대학 직제 조정

가. 조정내용

구 분	현 행		조 정	비고
자유교양대학	글쓰기센터		기초교육센터	축전
	BSM센터			
	인성교육센터			
	천안캠퍼스 글쓰기센터		천안캠퍼스 기초교육센터	천안
	천안캠퍼스 BSM센터			
	천안캠퍼스 인성교육센터			

나. 조정사유

- 자유교양대학 산하 센터를 캠퍼스별 각각 하나의 센터로 통합하여 재학생의 기초소양교육 강화를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하고, 각 센터의 중복 사업 조정을 통한 인력 및 예산을 조정하여, 자유교양대학 산하 부속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함

다. 시행 시기 : 2024.3.1.부터



11. 프리무스국제대학 교학행정팀 신설

가. 신설내용

캠퍼스	현 행	신 설	비고
죽전	<신설>	프리무스국제대학 교학행정팀	

나. 신설 사유

- 프리무스국제대학 신설에 따라 교학행정팀을 신설하고자 함

다. 시행 시기 : 2024.3.1.부터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직제 조정

1. 조정 내용

구 분		현 행	조 정	비 고
치과대학 치과병원	진료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	진료부	<신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진료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조정이 없는 직제는 표기 제외

2. 조정 사유

가.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신설

- 세종치과병원은 세종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 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선정(2023.3.28.)되었으며, 2024년 4월 세종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예정 이므로 개소 이후 진료과 인력관리, 수입 및 지출,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별도의 독립된 진료센터를 신설하고자 함

나. 치과대학 치과병원 및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명칭변경

-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에 따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기존에 사용되었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명칭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변경되었음
-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신설에 따라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기관 간 명칭 통일을 위하여 치과대학 치과병원과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시행 시기 : 2024.3.1.부터



의료원 직제 조정

1. 조정 내용

구분		현 행			조 정	
충남 지역 암센터	충남 지역 암센터 부센터장	암관리 기획실	암관리 기획팀	암관리기획파트	<현행과 동일>	
		암진료부		종양혈액암센터		
				폐암센터		
				간담도췌장센터		
				위장관센터		
				유방암센터		
				갑상선센터		
				두경부암센터		
				비뇨암센터		
		암연구부		NGS검사실	완화의료센터	자문형호스피스파트
		암관리사업부		암예방관리센터		입원형호스피스파트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완화의료센터		<신설>		
간호부	병동 2팀	31병동, 뇌졸중집중치료실, 35병동, 41병동, 42·3병동, 45병동, 51병동, 55병동, <신설>			31병동, 뇌졸중집중치료실, 35병동, 41병동, 42·3병동, 45병동, 51병동, 55병동, 56병동(완화의료병동)	

※ 조정이 없는 직제는 표기 제외

2. 조정 사유

- 의료원은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에 따른 충남지역암센터 및 충남 권역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수행기관으로 선정(2023.01.18.) 되었음
-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충남지역 암센터는 암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완화의료센터 산하에 자문형호스피스파트와 입원형호스피스파트를 신설하고자 함
- 완화의료센터 관련 병동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호부 병동 2팀 산하에 56병동(완화의료병동)을 신설하고자 함

3. 시행 시기 : 2024.3.1.부터



<별첨 3>

단국대학교 교육편제(조직) 및 정원 조정

1. 대학 교육조직 및 편제 조정

가. 교육조직 조정내용

- 프리무스국제대학 신설

캠퍼스	현행	조정	시행시기	비고
죽전	<신설>	프리무스국제대학	2024-1학기부터	

* 프리무스(PRIMUS)는 라틴어로 '최고', ' 으뜸', '선두' 등을 뜻하며,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과 목표인 '도전(Pioneer)', '진리(Righteousness)', '창조(imagination)', '헌신(Mission)', '공동체(Unity)', '봉사(Service)'의 의미를 담아 교육·연구 및 국제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나. 교육편제 조정내용

- 프리무스국제대학 산하 학부(과) 신설

캠퍼스	현행			조정			시행시기	비고
	대학	학부(과)	정원	대학	학부(과)	정원		
죽전	경영경제대학	글로벌경영학과	40	경영경제대학	<폐지>	-	2025-1학기부터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	30	SW융합대학	<폐지>	-		
	<신설>	<신설>	프리무스 국제대학		국제경영학과	40	2025-1학기부터	
					모바일시스템공학과	30		
					바이오소재융합공학과**	-	2024-2학기부터	
					한국학과	-		
					연기영상예술학과	-		
					글로벌기초교육학부***	-		

* 입학정원은 내국인 입학정원을 의미하며 외국인인 입학정원 제한 없음

** 바이오소재융합공학과는 현행 공과대학의 융합시스템공학전공(외국대학과의 협약에 의한 융합전공)을 폐지하고 프리무스국제대학에 신설되는 학과임

*** 글로벌기초교육학부 재학생은 2학년 진학 시 죽전, 천안캠퍼스 한국어트랙 학과로 소속을 변경함

다. 조정사유

-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인 영어트랙 확대, 세계 수준의 교육 콘텐츠 개발, 외국인 유학생 효율적 관리 및 글로벌 교육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한 전담 교육조직이 필요함
- 프리무스국제대학 및 학부(과) 신설로 국제 표준 교육과 다각적 국제교류를 확대하여 우리 대학의 글로벌 특성화 및 미래지향적 교육가치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대학 교육편제 및 정원 조정 【교육부 승인 조건부 신설】

가. 조정내용

캠퍼스	대학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비고
		학과	정원	학과	정원	
죽전	SW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87	<현행과 동일>	87	
		컴퓨터공학과	50	<현행과 동일>	50	
		모바일시스템공학과	30	<폐지>	-	프리무스 국제대학으로 교육편제 조정 예정 (2025학년도부터)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35	<현행과 동일>	35	
		사이버보안학과	30	<현행과 동일>	30	
		<신설>		인공지능학과	40	최대 예정인원

나. 조정사유

-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의 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학술적 발전 능력과 문제해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현장형 AI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2025학년도 교육부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의 정원조정 방식 중 첨단(신기술) 분야 정원 순증* 방법을 통해 신설 신청을 하되, 2024년 4월 발표되는 교육부 승인을 조건부로 하여 2025학년도 1학기에 SW융합대학 내에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하고자 함

*첨단(신기술) 분야 정원 순증 : 교원확보율 및 첨단분야 관련성 등 증원 평가 기준 충족 시 정원 순증 가능

다. 시행시기 : 2025학년도 1학기부터



3. 대학 교육조직 신설

가. 조정내용

현행		신설		비고
대학	학부(과)	대학	학부(과)	
혁신융합대학	바이오헬스융합학부	혁신융합대학	바이오헬스융합학부	
	첨단인재융합학부		첨단인재융합학부	
	<신설>		글로벌 K-컬처 융합학부	

※ 무정원 혁신융합대학 글로벌 K-컬처 융합학부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전공을 운영하는 교육조직임

나. 조정사유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주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의 글로벌·문화 분야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 참여대학(동서대, 원광대, 청강문화산업대, 한서대)과 함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약 28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을 예정임
- 이와 연계하여 문화기술(CT) 분야의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세계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K-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해 글로벌 문화콘텐츠산업과 시장 트렌드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 혁신융합대학 내에 글로벌K-컬처융합학부를 신설하여 인문·사회, 문화예술, 디지털 기술 분야의 문제해결 역량과 융합적 사고를 갖춘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자체 문화예술콘텐츠 산업에 기여하고자 함
- 글로벌K-컬처융합학부 산하에는 4개의 전공(영화/드라마, 웹툰/애니메이션, 음악/공연, 문학/웹소설)이 신설될 예정이며, 전공별로 각각 4가지 세부 트랙(스토리텔러,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벨류에이터)으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임

다. 시행시기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편제 조정

1. 일반대학원 교육편제 조정

가. 조정내용

캠퍼스	학위과정	입학정원	학 과		비고
			2024학년도 1학기	2024학년도 2학기	
죽전	박사과정	264명*	~	e스포츠학과	신설

* 입학정원은 총정원 내에서 선발

나. 조정사유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부상한 스포츠 분야 창의적 융복합산업 발전과 e-스포츠산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한 산업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현장 및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e-스포츠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연구 능력 극대화를 통한 혁신 전문 인재와 현장 실무중심의 역량을 겸비한 e-스포츠마케팅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므로 박사과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 시행시기 : 2024학년도 2학기부터



2. 특수대학원 교육편제 조정

가. 조정내용

캠퍼스	대학원명	입학정원	학과	전공		비고
				2024학년도 1학기	2024학년도 2학기	
죽전	경영대학원	120명*	경영학과	회계전공	회계·세무전공	명칭 변경
	문화예술대학원	155명*	공연예술학과	뮤지컬·연극전공	뮤지컬·오페라·연극전공	명칭 변경
			AI예술창작학과	AI전자현악전공	AI전자기악전공	명칭 변경

* 입학정원은 총정원 내에서 선발

나. 조정사유

1)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산하 전공 명칭 변경

- 최근 회계뿐만 아니라 세무사, 세무공무원 등 세무업 관련 분야 종사자의 경영학과 회계전공 입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학과 홍보와 유치, 학과 내 교육과정의 특성 등 다수의 요인을 고려한 결과 회계·세무전공으로 전공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문화예술대학원 공연예술학과 및 AI예술창작학과 산하 전공 명칭 변경

- 오페라 분야의 전공 수요와 외국인 유학생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관련 경쟁력 제고 및 학생자원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자 공연예술학과의 전체 커리큘럼을 아우를 수 있는 뮤지컬·오페라·연극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기존의 AI전자현악전공은 현악, 피아노, 관악기 등의 세부 분야를 통칭할 수 있는 AI전자기악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다 많은 학생자원을 확보하고자 함

다. 시행시기 : 2024학년도 2학기부터



<별첨 4>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취득

■ 취득대상 :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35-4 15,034㎡(약 4,547.78평)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	2023년 개별공시지가	감평평가금액	취득구분	비고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35-4	임야		3,206㎡			매입	자연녹지
				11,828㎡			기증	보전녹지
합계				15,034㎡				

■ 취득사유 및 활용 계획

- 천안캠퍼스 학교결정부지에서 제척되어있는 사유지(씨름연습장 뒤 임야)를 매입하여 체육부 교육 및 운동 공간으로 활용
- 교지 확보 및 대학 경계선 선형화를 통해 향후 교사시설(교육연구시설 또는 의료시설 등) 추가 확보 기반 마련

■ 매입토지(3,206㎡) 취득예정(협의)금액 :

/ 교비회계(비등록금)



<별첨 5>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차량운반구 처분

■ 차량운반구 처분 현황

구분	차종	접수	취득일자	취득금액(원)	잔존가액
죽전캠퍼스	스쿠터 (경기용인마8651)	1	2013.05.24.	2,928,400원	0원

■ 처분사유 : 내용연수 도과 및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부품 수급의 어려움

■ 처분계획 : 폐차처리

<별첨 6>

의료원 불용고정자산 처분

■ 불용 고정자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정	접수	구입금액	감가상각액	잔존가액	비고
의과대학 부속병원	기계장치	2	2,975,000	2,973,000	2,000	한 점당 잔존가액 1,000원
	건물부속설비 ¹⁾	4	58,921,989	58,921,989	0	
	공기구비품(의료비품)	298	143,656,379	143,358,379	298,000	
	공기구비품(일반비품)	821	582,999,241	582,178,241	821,000	
	의료장비	121	2,301,403,080	2,301,282,080	121,000	
합 계		1,246	3,089,955,689	3,088,713,689	1,242,000	

1) 개원 초기 감가상각완료 장비 잔존가액 0원 처리한 계정

■ 처분사유 : 기계장치, 건물부속설비, 공기구비품, 의료장비의 노후 및 고장

■ 처분계획

- 건물부속설비, 의료장비 : 매각 및 폐기 처리
-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 폐기 처리



<별첨 7>

의료원 기채 승인

■ 기채 신청사항

기 채 처	우리은행
기 채 한 도 액	금200억원
이 율	5.6%(분기별 변동금리)
기 채 조 건	7년 분할상환
담 보	신용대출(해당없음)
기 채 사 유	로봇 수술기 도입 및 수술실 리모델링
상 환 재 원	부속병원회계(의료원회계)

■ 기채 사유 : 단국대학교병원의 수술실 감염관리지침 준수와 향후 의료기관인증, 상급 종합병원 평가 대비를 위한 수술실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 최첨단 로봇 수술기 도입 등 의료 환경 개선 투자를 위하여 기채를 신청하고자 함

<별첨 8>

죽전치과병원 불용고정자산 처분

■ 불용 고정자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정	점수	구입금액	감가상각액	잔존가액	비고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의료장비	47	660,172,450	660,125,450	47,000	한 점당 잔존가액 1,000원
	공기구비품	159	37,834,230	37,675,230	159,000	
	기타유형자산	15	1,039,550,763	1,039,535,763	15,000	
합 계		221	1,737,557,443	1,737,336,443	221,000	

■ 처분사유

- 의료장비 및 공기구비품 : 노후 및 고장으로 처분하고자 함
- 기타유형자산 : 죽전치과병원 개원 당시(2011년) 공사를 '기타유형자산'으로 처리한 것이며 2023년도 신규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내용연수가 지난 기존 공사내역을 폐기하고자 함

■ 처분계획 : 의료장비, 공기구비품, 기타유형자산 폐기 처리



<별첨 9>

죽전치과병원 기채 일부 변경

■ 기채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기 채 처	하나은행	한국사학진흥재단
기 채 한 도 액	금40억원	금40억원
이 율	6.10%(분기별 변동금리)	2.67%(분기별 변동금리)
기 채 조 건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	4년거치 6년 분할상환
담 보	신용대출(해당없음)	좌 동
기 채 사 유	죽전치과병원 리모델링 공사	좌 동
상 환 재 원	부속병원(죽전치과병원회계)	좌 동
기 채 기 간	2022.01.28. ~ 2034.01.25	2024.03.15. ~ 2033.12.31

■ 변경사유 : 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리모델링공사자금 기채에 대하여 저금리의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금으로 대환대출하여 이자 및 원금 상환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별첨 10>



<별첨 11>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고등학교 교장
자격인정,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및 교장 임명**

■ 교장 자격인정, 자격연수 추천 및 교장 임명 대상자 명단

현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명교	임명 직위	임명일자	임기	추천구분
단대부고	교감	배		단국SW고	교장	2024.03.01	2024.03.01 ~2026.08.31	자격인정, 자격연수
단대부중	교감	송		단대부중	교장	2024.09.01	2024.09.01 ~2027.02.28	자격연수

<별첨 12>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및 교감직무대리 임명**

■ 교감 자격연수 추천 및 교감 직무대리 임명 대상자 명단

현소속	직위	담당과목	성명	생년월일	임명교	임명직위	임명일자	비고
단대부고	교사	한문	송		단대부고	교감 직무대리	2024.03.01	



<별첨 13>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원 임용

■ 신규임용

임용교	성명	생년월일	임용직급	담당과목	임용일자	비고
단대부고	이		교사	국어	2024.03.01	
단대부고	안		교사	영어	2024.03.01	

■ 복직 및 의원면직

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과목	생년월일	휴직사유	기간*	면직일자	비고
단대부고	교사	하	영어		육아휴직	2021.07.30 ~ 2024.01.11	2024.01.13	의원 면직

*복직일자 : 2024.01.12

■ 전보

소속	직위(급)	성명	생년월일	담당과목	전출교명	전출일자
단대부고	교사	백		수학	단대부중	2024.03.01
단대부고	교사	김		수학	단국SW고	2024.03.01

<별첨 14>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및 교감 임명**

■ 교감 자격연수 추천 및 교감 임명 대상자 명단

현소속	직위	담당과목	성명	생년월일	임명교	임명직위	임명일자	비고
단대부중	교사	공통과학	안		단대부중	교감	2024.09.01	



<별첨 15>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원 임용

■ 신규임용

임용교	성명	생년월일	임용직급	담당과목	임용일자	비고
단대부중	권	-----	교사	영어	2024.03.01	
단대부중	권		교사	영어	2024.03.01	
단대부중	김		교사	미술	2024.03.01	

■ 퇴직

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과목	생년월일	면직일자	비고
단대부중	교사	박	수학		2024.02.29	명예퇴직

<별첨 16>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교원 임용

■ 신규임용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용직급	담당과목	임용일자	비고
단국SW고	하	-----	교사	정보·컴퓨터	2024.03.01	

■ 복직

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과목	생년월일	휴직사유	기간	복직일
단국SW고	교사	김	수학		육아휴직	2023.03.01. ~2024.02.29	2024.03.01

■ 과목변경

소속	직위(급)	성명	생년월일	담당과목 (변경 전)	담당과목 (변경 후)	과목변경 임용일자
단국SW고	교사	이		전기·전자·통신	진로진학상담	2024.03.01

■ 전보

소속	직위(급)	성명	생년월일	담당과목	전출교명	전출일자
단국SW고	교사	이		수학	단대부고	2024.03.01
단국SW고	교사	오	-----	정보·컴퓨터	단대부고	2024.03.01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자금예산서

【별첨17-1】 2023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자금예산서(단대부고)

【별첨17-2】 2023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자금예산서(단대부중)

【별첨17-3】 2023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자금예산서(단대SW고)

【별첨17-4】 2023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자금예산서(단국대학교)

【별첨17-5】 2023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가경정자금예산서(의료원)

【별첨17-6】 2023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가경정자금예산서(부속치과병원)

【별첨17-7】 2023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가경정자금예산서(죽전치과병원)

【별첨17-8】 2023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추가경정자금예산서

【별첨17-9】 2023년도 법인 수익사업회계 추가경정자금예산서
(단국대학교병원 천안장례식장)

【별첨17-10】 2023년도 법인 수익사업회계 추가경정자금예산서(단국세종빌딩)

【별첨17-11】 2023년도 법인 수익사업회계 추가경정자금예산서(단국성정빌딩)



2024회계연도 자금예산서

- 【별첨17-12】 2024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단대부고)
- 【별첨17-13】 2024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단대부중)
- 【별첨17-14】 2024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단대SW고)
- 【별첨17-15】 2024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단국대학교)
- 【별첨17-16】 2024년도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서(의료원)
- 【별첨17-17】 2024년도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서(부속치과병원)
- 【별첨17-18】 2024년도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서(죽전치과병원)
- 【별첨17-19】 2024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자금예산서
- 【별첨17-20】 2024년도 법인 수익사업회계 자금예산서
(단국대학교병원 천안장례식장)
- 【별첨17-21】 2024년도 법인 수익사업회계 자금예산서(단국세종빌딩)
- 【별첨17-22】 2024년도 법인 수익사업회계 자금예산서(단국성정빌딩)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 처분대상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588-5 외 3건 112㎡(33.94평)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보상단가 (평균감정액)	보상금액	취득가	양도차액	비고
서탄면 내천리	588-5	도로	13	13	₩259,500	₩3,373,500	₩60,133	₩3,313,367	
서탄면 내천리	588-16	도로	64	64	₩259,500	₩16,608,000	₩296,042	₩16,311,958	588-5에서 분할
서탄면 내천리	588-13	도로	15	15	₩259,500	₩3,892,500	₩69,374	₩3,823,126	
서탄면 내천리	588-17	도로	20	20	₩259,500	₩5,190,000	₩92,499	₩5,097,501	588-13에서 분할
합계	4필지		112	112		₩29,064,000	₩518,048	₩28,545,952	

■ 처분사유 : 평택시 고덕 산단 2차 용수공급 시설공사 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 처분예정금액 : 이천구백육만사천원정(₩29,064,000-)

■ 처분금융도

- 수익용기본재산 대체취득(신탁예금) : 518,048원 (취득가액)
- 교비회계 범정부담금 전출 : 28,545,952원 (양도차액)

■ 처분금융도 구분사유 :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가액만큼 대체취득함으로써
기본재산의 감소를 막고, 양도차액만큼 고유목적사업(교비회계 전출)에 사용
함으로써 세제(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개정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개정요점
제36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6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 정관 반영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현행	개정	개정요점
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호 신설>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호 신설> <호 신설> <호 신설> 9.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 제37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6조제1호 및 제9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36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6조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인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7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6조제1호 및 제9호, 제12호, 제1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6조제12호는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2. 제36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6조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 휴직의 사유 신설에 따른 휴직기간 개정



현행	개정	개정요점
로 한다. 4. 제36조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6조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6. 제36조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7. 제36조제8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호 신설> 제39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6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보수로 지급한다. ② 제36조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9호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6조제7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는 출산 장려를 위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항 신설> <항 신설>	로 한다. 4. 제36조제5호 및 제10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6조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6. 제36조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36조제8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36조제1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9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6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보수로 지급한다. ② 제36조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제7호의 2 내지 제10호, 제12호, 제13호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36조제7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는 출산 장려를 위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6조제1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휴직의 사유 신설에 따른 휴직 교원의 처우 개정



현행	개정	개정요점
<조 신설>	제40조의3(당연퇴직의 사유) ①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② 대학교 교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 정관 반영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6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46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 당해(當該)를 해당(該當)으로 용어 변경
제4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의 보직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정년보장교원의 임용 4. 계약제 임용의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제4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동일>	



현행	개정	개정요점
사항 5. 강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가 제35조제2항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임용 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8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총장이 지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중·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징계 포함)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신규 교원임용에 관한 사항 3.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4.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6. 교원의 포상 및 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현행과 동일> 제48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현행과 동일>	■ 서울시교육청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지침 반영



현행	개정	개정요점
② 중·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당해 학교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9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대학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다만, 교학부총장이 공석일 때에는 천안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중·고등학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5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 신설> 제51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② 중·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해당 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당연직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한 교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조직한다. ③ <현행과 동일> 제49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현행과 동일> ② 중·고등학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현행과 동일> ④ <현행과 동일> 제5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동일>	■ 서울시교육청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출로 변경 ■ 서울시교육청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대학교 인사위원회와 구분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의사 및 의결정족수 변경 ■ 당해(當該)를 해당(該當)으로 용어 변경



현행	개정	개정요점
제52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항 신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대학교 인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대학교의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③ 중·고등학교 인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해당 학교 인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대학교 인사위원회와 구분 ■ 서울시교육청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름
제60조의2(징계사유 시효)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의2(징계사유 시효)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52조 1호 내지 4호 삭제에 따른 사립 학교법 개정내용 반영
제73조(하부조직) ① <생략> ② 대학교에 교무처·천안캠퍼스 교무처·입학처·학생처·천안캠퍼스 학생처·취창업지원처·총무인사처·총무처·재무관리처·대의협력처·마다아콘텐츠포보처·국제처를 둔다. 각 처에는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취창업지원처·대의협력처·국제처의 처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③-⑤ <현행과 동일>	제73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동일> ② 대학교에 교무처·천안캠퍼스 교무처·입학처·천안캠퍼스 입학처·학생처·천안캠퍼스 학생처·취창업지원처·총무인사처·총무처·재무관리처·대의협력처·국제처를 둔다. 각 처에는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취창업지원처·대의협력처·국제처의 처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③-⑤ <현행과 동일>	■ 대학 직제 조정 내용 반영



현행	개정	개정요점
<조 신설>	제106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다.	■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 정관 반영
제106조(설립당초의 임원) <생략>	제107조(설립당초의 임원) <현행과 동일> 부칙 <2024.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 번호 변경



법인 정관 시행세칙 개정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요점
제8조의2(대학교 하부조직의 설치) ① 정관 제73조제3항에 따라 둘 수 있는 센터, 사업단, 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교무처와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교무팀·학사팀을 둔다. 4. 입학처에 입학1팀·입학2팀을 둔다. 5.~6. <생략> 7. 취창업지원처에 취창업진로1팀·취창업진로2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두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사업운영팀을 둔다. 8. 총무인사처에 총무인사팀·구매팀·안전관리팀·중대재해관리팀을 두고, 총무처에 총무팀·구매팀·안전관리팀·중대재해관리팀을 둔다. 9. 재무관리처에 재무회계1팀·재무회계2팀·자산관리1팀·자산관리2팀을 둔다. 10.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1팀·대외협력2팀을 둔다. 11. 미디어콘텐츠홍보처에 홍보팀·출판팀·뉴미디어운영팀·단국미디어센터를 둔다. 12. <생략> 제11조(정원) 정관 제82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8조의2(대학교 하부조직의 설치) ① <현행과 동일> 1.~2. <현행과 동일> 3. 교무처와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교무팀·연구팀·학사팀을 둔다. 4. 입학처와 천안캠퍼스 입학처에 입학팀을 둔다. 5.~6. <현행과 동일> 7. 취창업지원처에 취창업진로1팀·취창업진로2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두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사업운영1팀·사업운영2팀을 둔다. 8. 총무인사처에 총무인사팀·시설팀·안전관리팀을 두고, 총무처에 총무팀·시설팀·안전관리팀을 둔다. 9. 재무관리처에 재무회계1팀·재무회계2팀·구매관제1팀·구매관제2팀을 둔다. 10.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홍보팀을 둔다. 11. <삭제> 12. <현행과 동일> 제11조(정원) 정관 제82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부칙 <2024. 2. 7.>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 직제 조정 내용을 정관 시행세칙에 반영 ■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법인 및 치과대학 치과병원 직급별 정원 일부 조정



[별표 1] 법인과 대학교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

직종	직급	법인			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병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	의료원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일반직	계	20	20	-	<생략>	126	126	-	<생략>	<생략>	<생략>												
	2급(참여)	1	1			1	1																
	3급(부참여)	2	2			1	1																
	4급(참사)	2	2			2	2																
	5급(부참사)	5	5			4	4																
	6급(주사)	3	3			107	107																
	7급(부주사)	3	4	▲1		4	4																
	8급(서기)	4	3	▼1		7	7																
	9급(부서기)																						
기술직	계					55	55	-				<생략>	<생략>	<생략>									
	2급																						
	3급																						
	4급					1	1																
	5급					4	4																
	6급					24	24																
	7급					11	12	▲1															
	8급					15	14	▼1															
	9급																						
원무직	계					11	11	-							<생략>	<생략>	<생략>						
	5급																						
	6급					4	4																
	7급					5	5																
	8급					2	2																
기능직	계	4	4	-		8	8	-										<생략>	<생략>	<생략>			
	6급	1	1			7	7																
	7급	1	1																				
	8급	1	1																				
	9급	1	1			1	1																
	10급																						
별정직	계																				<생략>	<생략>	<생략>
	4급(참사대우)																						
	5급(부참사대우)																						
	6급(주사대우)																						
	7급(부주사대우)																						
	8급(서기대우)																						
	9급																						
	10급																						
총 계		24	24			200																	



보 고 사 항

1.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결과 보고

○ 보고 사유

2023년 5월에 처분완료한 오산 원동3구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조성공사 및 서울시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교육부에 처분신고와 수리를 받아 잔금 수령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처분대금 사용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보고

○ 상세 내용

- 1) 처분근거 : 사립대학정책과-14341(2022.11.22) “학교법인 단국대학교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 신고 수리(공익사업)”
- 2) 처분방법 : 손실보상(매수자 : 주식회사 엠에스홀딩스, 종로구청)
- 3) 처분금액 : 774,091,070원
- 4) 수입 및 지출내역

처분대상	수입 [토지매각대]	지출	
		교비회계 전출	수익용기본재산 대체취득
경기도 오산시 원동 8-2번지 1필지 52㎡	15,322,320원	13,588,240원	1,734,080원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640-376번지 외 8필지 453.5㎡	758,768,750원	487,860,750원	270,908,000원



2. 보수 관련 규정 및 교직원 보수표 개정 내용 보고







